



##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문(안)

### 1. 지향점

- 딥러닝기반 인공지능(AI)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,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(LLM)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음
-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기술이므로,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

### 2.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·윤리적 기준 제정 필요

-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, 현재 인공지능 기술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함께 재판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·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·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되, 그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
  - ① 기본권보장 및 평등의 원칙
  - ② 신뢰성 원칙
  - ③ 합법성 원칙
  - ④ 책임성 원칙
  - ⑤ 투명성 원칙